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알뜰폰의 요금 인하 여력을 마련하여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받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자인 경우, 전파사용료 산정시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하여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안 제90조제1항)

나.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과거 위반 이력·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적용하고자 함(안 제90조 제1항 각 호 개정, 5항 및 6항 신설)

다. 전파사용료 산정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하고
가중·감경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한 관계 기관의 장,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함(안 제90조제7항 및 8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조회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를 “경우로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전파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100분의 20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처

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우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해당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거나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9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거 위반 이력 및 위반 정도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거나 뺀 비율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내용·규모가 중대하거나 이용자 피해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관계 기관의 사실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다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면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 오류 등 고의성 없는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거나 이용자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현저히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율 및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비율은 처분일이 속한 분기의 첫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분기별로 해당 처분 내용(처분 상대방, 처분 사유, 처분의 종류 및 처분일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관한 자료를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 ----- ----- ----- -----. ----- ----- ----- ----- ----- ----- 경우로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전파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	1. 해당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도매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
를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100분의 20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

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
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그 사업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
조 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
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이 취소된 경우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8조의8에 따른 과
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
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3.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
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 ④ (생략)

<신설>

우

2. 해당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2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거나 제104조에 따른 과태

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거나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

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90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거
위반 이력 및 위반 정도 등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 ·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거나 뺀 비율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내용 · 규모가 중대하거나 이용자 피해 또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관계 기관의 사실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다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 경위 및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면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 오
류 등 고의성 없는 위반으
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
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
정하거나 이용자 피해 구
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저히 노력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 경위 및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율을 늘릴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 설>

<신 설>

비율 및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비율은 처분일이 속한 분기의 첫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결정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분기별로 해당 처분 내용(처분 상대방, 처분 사유, 처분의 종류 및 처분일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관한 자료를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과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4923